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시·도지사 이양》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96호)

2025.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제220689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의 경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안 제29조 및 제40조)	2

I. 서일준의원 대표발의(제220689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일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2. 24.

다. 회 부 일 : 2024. 1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을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함(안 제29조 및 제40조).

3. 검토의견

가.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의 경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안 제29조 및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u>해양수산부장관</u> 이 결정한다. 1. ~ 3. (생략)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u>도시·군관리계획</u>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가 -----. 1. ~ 3. (현행과 같음) 4. ----- ----- <u>도시·군관리계획(전체 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u>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는 ----- ----- ----- ----- ----- ----- <u>있다(시</u>

현행	개정안
있다.	· 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¹⁾이란 현행법 제40조²⁾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말하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현행법 제29조³⁾ 및 제4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와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1) 「수산자원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수면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해당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가 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변경 권한을 이양하되,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지정 및 변경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4)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같은 법 제52조제2항5)에 따라 건축 등에 있어 일정한 경우 허가를 해주고 있는 만큼, 일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 및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수산자원관리법」

제5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5)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허가대상행위”라 한다)에 한정하여 그 구역을 관할하는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임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관리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와 관련된 사업계획,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계획, 환경오염방지계획,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⑦(생략)

또한, 현행법 제139조제1항⁶⁾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3호⁷⁾에서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23.2.10.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서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이양하기로 발표하였으며, 그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 권한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은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

과제명	주요 내용	부처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변경 권한	(현행) 1km ² 미만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토지부·수면부 구분 없이 면적기준으로 위임) → (개선) 토지부 전체 시·도지사 이양, 수면부 1km ² 미만 시·도지사 이양	해양 수산부

※자료: 국무조정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관리를 소관하는 해양수산부가 지방이양 필요성, 이양 범위를 검토하여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로 확정된 사안으로 개정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며,

해양수산부는 현재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일부(1km² 미만)가 이미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지자체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현지실정에 맞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이양할 필요가 있으나, 이양범위는 개발행위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토지부는 면적 전체를 이양하되, 수면부는 1km² 이내로 이양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1

참고 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현황('23년 말 기준)

□ 총괄

(단위: km²)

계	해수면			내수면		
	소계	수면	육지	소계	수면	육지
3,169.547	2,860.647	2,493.691	366.956	308.9	266.324	42.576

□ 해수면 지역별 지정 현황

(단위: km²)

지 역	시·군	대상 읍·면	지정면적		
			계(A+B)	수면(A)	육지(B)
합 계	22개	82개	2,860.647	2,493.691	366.956
총 남	4개	6개	145.377	130.651	14.726
천수만	보령시	오천면	0.001	0.001	-
	서산시	부석면	10.162	10.162	-
	홍성군	결성면, 서부면	29.551	29.238	0.313
	태안군	안면읍, 고남면	105.663	91.250	14.413
전 남	11개	44개	1,509.043	1,271.131	237.912
함평만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67.776	48.459	19.317
	영광군	염산면	91.020	76.950	14.070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45.172	33.318	11.854
완도·	강진군	강진읍 등 7개 읍면	75.086	54.590	20.496
	완도군	완도읍 등 5개 읍면	256.730	218.899	37.831
도암만	장흥군	대덕읍, 회진면	18.939	16.037	2.902
	해남군	북평면, 북일면	49.197	28.384	20.813
득량만	고흥군	도양읍 등 9개 읍면	371.672	304.266	67.406
	장흥군	관산읍, 용산면, 안양면	15.043	15.043	-
여자만	보성군	조성면 등 4개면	76.868	75.043	1.825
가막만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27.568	27.400	0.168
	여수시	돌산읍 등 5개 읍면	413.972	372.742	41.230
경 남	7개	32개	1,206.227	1,091.909	114.318
진동만	창원시	구산·진동·진전면	104.956	93.850	11.106
	통영시	산양읍 등 7개 읍면	476.819	452.629	24.190
한산만	사천시	서포면	53.476	43.650	9.826
	거제시	동부면 등 7개 면	193.216	153.045	40.171
남해-통영1	고성군	고성읍 등 5개 읍면	164.764	140.149	24.615
남해-통영2	남해군	남해읍 등 7개 읍면	201.959	198.605	3.354
	하동군	진교면 등 2개 면	11.037	9.981	1.056

□ 내수면 지역별 지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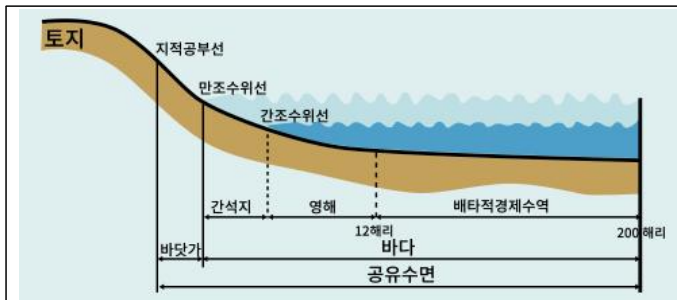
(단위: km²)

지역	사군	대상 읍면	지정면적		
			계(A+B)	수면(A)	육지(B)
계	24개	83개	308.9	266.324	42.576
경 기	3개	13개	30.053	30.053	-
청평호	가평군	가평읍, 청평면	7.708	7.708	-
평택호	평택시	팽성읍 등 5개면	15.167	15.167	-
남양호	평택시	청북면, 포승읍	3.696	3.696	-
	화성시	우정읍 등 4개면	3.482	3.482	-
강 원	5개	15개	109.334	76.561	32.773
소양호	춘천시	동면, 북산면	33.611	32.704	0.907
	양구군	남면	1.989	1.547	0.442
	인제군	남면	19.152	17.715	1.437
춘천호	춘천시	서면, 사북면	8.824	1.118	7.706
	화천군	하남면	4.474	3.976	0.498
파로호	화천군	화천읍, 간동면	23.365	10.984	12.381
	양구군	양구읍, 방산면	13.408	6.726	6.682
남대천	양양군	양양읍, 서면, 손양면	1.426	1.360	0.066
청평호	춘천시	남산면	3.085	0.431	2.654
충 북	3개	8개	17.775	17.775	-
대청호	보은군	회남면	5.302	5.302	-
	옥천군	안내면 등 4개면	10.970	10.970	-
괴산호	괴산군	칠성면 등 3개면	1.503	1.503	-
충 남	3개	13개	38.01	38.01	-
아산호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5.769	5.769	-
삼교호	아산시	인주·선장·신창면	12.347	12.347	-
	당진시	신평·우강·함덕읍	9.978	9.978	-
	예산군	신암면	0.506	0.506	-
예당호	예산군	신양·광사·대흥·응봉면	9.41	9.41	-
전 북	2개	3개	15.420	15.420	-
옥정호	임실군	운암면, 강진면	11.032	11.032	-
	정읍시	산내면	4.388	4.388	-
전 남	5개	20개	48.598	46.423	2.175
나주호	나주시	다도면	5.671	5.661	0.010
영산호	나주시	공산·다사·동강·왕곡면	5.973	5.935	0.038
	영암군	학산면 등 8개 읍면	20.858	18.731	2.127
	함평군	학교면, 엄다면	1.234	1.234	-
	무안군	삼향읍, 일로읍, 몽탄면	13.637	13.637	-
보성호	보성군	미력·겸백면	1.225	1.225	-
경 북	3개	11개	49.710	42.082	7.628
안동호	안동시	와룡면 등 7개면	39.470	39.470	-
오십천	영덕군	영덕읍 등 3개면	8.717	2.365	6.352
왕피천	울진군	근남면	1.523	0.247	1.276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 3

수산자원보호구역 현황도



(목적) 연안의 간척매립 등의 개발행위 및 연안어장의 오염으로부터 어장가치가 있는 어패류의 산란장 및 서식장, 양식적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

(대상) 공유수면 및 인접토지

